

- 조례와 의정 -
2020년 연구활동보고서

2021. 1.



청주시의회

1

구성 회원

대표위원 : 경제환경 위원회 박용현 의원

간 사 : 행정문화 위원회 김미자 의원

회 원 : 경제환경 위원회 박미자 의원

복지교육 위원회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 위원회 변종오 의원

농업정책 위원회 박노학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이현주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정태훈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남일현 의원

2 회원별 연구분야

1. 자치입법 사례 분석

변종오, 남일현, 정태훈, 이현주, 박용현

2. 의정자료 사례 연구

김영근, 김미자, 박노학, 박미자, 박용현

3. 연구용역

변종오, 김미자, 남일현, 이현주, 박미자, 박노학

정태훈, 김영근, 박용현

3 앞선말

본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는 2019년 첫 모임을 시작하여, 2020년 두 번째 모임을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 왔다. 코로나19와 2020 총선으로 정기적 활동이 미흡하였지만 나름대로 과제를 선정하여, 회원들이 분과별로 분임 토의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여 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연구”를 선정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용역 착수보고회를 제외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회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치입법이란” 과제물과 “청주시 의회 회의 규칙과 청주시 의회 기본조례(안)의 초안과 연구용역 결과물이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청주시의회도 ”자치법규 실효성 영향평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의 권익 보장과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4. 자치입법이란

가. 개념과 의의

1)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권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이며, 자치입법 활동의 핵심은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위임하거나 허용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으로 지방적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등이 있다.

2) 자치법규의 입안

자치법규의 입안이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특정 정책의 내용을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일련의 자치입법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 안이 공포되면 주민 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된다.

나. 관계 법령

1)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가벼운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으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4)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인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자치법규의 종류

조례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법령의 위임】

1. 위임조례 : 개별 법령의 위임 때문에 제정
2. 자치조례(직권조례) :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한 조례

【재량 여부】

1. 임의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하여 제정
2. 필수조례 :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

【주민과의 관계】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1. 위임규칙 : 법령(법령위임규칙) 또는 조례(조례위임규칙)의 위임 때문에 제정되어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칙
2. 직권 규칙 : 교육훈련이나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 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규칙
3. 조례 집행규칙 :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규칙

□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으로는 ① 소관 사무의 원칙, ② 법령 우위의 원칙, ③ 법의 일반원칙, ④ 법률유보의 원칙, ⑤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있다. - 이 원칙들을 위반한 자치법규는 위헌 및 위법한 것으로 무효하거나 재의·재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은 중요하다.

가. 소관 사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 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함.

- ▶ 자치사무 :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위한 사무이자 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 제정 가능.
- ▶ 단체위임사무 : 일정한 사무를 국가 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 제정 가능.
- ▶ 기관위임사무 : 일정한 사무를 국가 사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제정 불가.

나. 법령 우위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이때 법령의 범위 안이란 헌법, 법률,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총칭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02추16)

다.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 ① 입법 목적의 정당성 -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 ②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
- ③ 피해의 최소성 -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하더라도, 더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익의 균형성 -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 헌법 제11조 제1항에 있는 원칙으로, 법의 내용 및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합리적인 이유란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고, 차별의 기준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계에 있으며, 차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93헌바57)

-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신뢰 보호의 원칙

이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소급효를 가지는 자치법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

①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

-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인 허용이 있다.

※ 예외적 허용

- ▶ 진정 소급입법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
 - ▶ 특별한 사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경우,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 있다.
- ▶ 부진정 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하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②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

-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입법 형성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4) 적법절차의 원칙

- ▶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으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 ▶ 신체의 자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적용됨
- ▶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제적인 법률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까지 포함(헌재 92헌가8)
-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5) 체계 정당성의 원칙

- ▶ 하나의 규범 내에서나 둘 이상의 규범 간에 구조·내용·근거 등이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 특정한 입법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보다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기존 법규와의 조화를 염두 해야 한다.

6)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경우, 위임조례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법 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법령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정하려는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법 2013두14238)

▶ 위임방법

- ▶ 하위법규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 또는 하한을 조례에 규정.
- ▶ 조례에서 일정 부분을 규정하고 나서 하위법규에서는 그 밖에 그에 따르는 내용을 규정.

※ 예시 :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한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 조례 제()조에 따라 ~할 때는~

라.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 (대법 96추244)

- ▶ 조례가 법령과는 별도의 목적으로 규율하나,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인해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는 경우.
- ▶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경우.

마.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따라서,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인정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것은 법령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09추53)

- ▶ **지방의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예산의 확정 등 의결권과 재의결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
- ▶ **자치단체장** : 조례안 등 의안과 예산안 편성 제출권,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 조례의 입법 절차

① 조례안의 입안·발의

가. 조례안 발의·제출

(지방자치법)

-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입법예고)

②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가.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1) 위원회 회부

- ▶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상임위원회에 넘기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넘기지 아니하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4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2) 위원회의 심사

- ▶ 제안자의 설명
 -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일 때 자치단체의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일 때 발의한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 설명.
-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전문위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체계·자구 등 형식적 문제 여부, 수정방안 등을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아는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위원회의 심사)

▶ **질의·토론**

-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위원회의 심사)

- ▶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할 수 있으며,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수정동의)

제5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표결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때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 조례안의 의결

- ① 원안의결 :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구의 변경,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은 원안의결로 본다.
- ② 수정의결 :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 일부를 추가·삭제·변경하여 의결.
- ③ 대안의결 : 일종의 수정안으로 원안과 취지는 같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의결.
- ④ 폐기 :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

나. 본회의 심의

1) 본회의 보고

-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조례안의 제안자가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안건 심의)

2) 질의·토론

- 질의는 제안자에게 하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의 문제점을 묻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의회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 질의 종료 후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 의원이 질의종결에 동의하고자 할 때는 의원 2명 이상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하며,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이를 동의할 수 없다.
- 질의·답변 후 의견이 나누어질 때는 찬반 토론 후 표결하며, 의장은 토론이 끝났거나 토론종결의 동의를 의결되었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질의 와 토론의 종결)

3) 표결

-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절차 및 방법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표결방법)

③ 조례안의 이송·공포

가. 조례안의 이송

-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나. 조례 · 규칙심의회회의의 심의

- 이송된 조례안은 집행기관 내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또는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 사전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상급기관은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재의요구나 제소지시 등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급기관이 조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사전보고 절차를 규정함.
-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포

1) 공포권자 및 공포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안하거나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전과 같이 의결되면 그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장의 공포

▶ 지방자치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전과 같이 의결·확정되어 지방자치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 공포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조례안에 대한 재의·제소

가. 재의요구 사유

- ▶ 지방의회가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 ▶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 ▶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부담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 경비를 삭감한 경우.
-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시·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할 경우.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요구 지시)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재의요구 절차

1) 재의요구와 환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의 사실 통보

- ▶ 재의요구 및 결과 사실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장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하였거나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와 재의요구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재의요구지시 사실 통보. (주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 **본회의 표결**

- ▶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
-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시 조례로 확정.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재의된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수정가결 할 수 없으며,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1)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

▷ 직접 제소

-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 등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제소

- ▶ 상급기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 ▶ 상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기간(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를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소를 지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를 지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급기관의 제소

▷ 제소지시 후 직접 제소

-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위반으로 판단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기관의 제소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재의요구 지시 후 직접 제소

-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위반으로 판단되어 상급기관이 재의요구를 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에도 상급기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판례로 본 위·적법성

※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경우

-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 2001.12.11. 선고 2001추64)

-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통폐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대법 2005.8.19. 선고 2005추48)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의 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되며,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 된다.

※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위원의 정수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조례로 의결할 경우

-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폐제,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실정에 맞게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직하도록 한 것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위원회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함.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상반된 다른 행정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의·의결할 경우.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란 뜻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 위 경우 지방자치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상반된 다른 행정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의·의결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경우.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선거권, 등을 갖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 또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짐(지방자치법 제43조). 여기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일 뿐, 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

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의원이 제외되었다면,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 어떤 사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규율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의 자치사무로 예시한 범주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며 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 이 사무는 관련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관한 것임으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하는 특정사항이 이미 국가의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조례가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의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므로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의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 1992.7.8. 선고 92추31, 1995.12.12. 선고 95추32)

※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는?

- ▶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상실된다.

또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국내산품을 수입산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조례안일 경우 GATT에 위반 되는가?

- ▶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4)의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자료는 기 출판된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참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정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일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삭제

제3조(의석 배정) 삭제

제4조(개회식) 삭제

제5조(선서) 삭제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삭제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삭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삭제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삭제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삭제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삭제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삭제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회·폐회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회)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회(開議)·정회(停會)·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회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2(회의의 공개) ①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② **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삭제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회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회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의2(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연장 및 휴회의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및 단축에 관한 건
5.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6. 법 제109조제2항 규정의 선결처분에 관한 승인의 건
7. 그 밖에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을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단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출 20일 전에 10일 이내의사전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제외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소관 위원회 및 조례안 발의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상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신설 2017.9.29.>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부의장·임시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9.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1. **회기 결정·변경과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2.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3.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14. 상임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되지 아니 할 때의 의안
1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 상정하여야 한다.

제25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의안·동회의의 수정,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변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변안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당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의안 :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 및 시장제출 의안 :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② 제1항의 변안동의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변안 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발의할 수 없다.

제29조(안건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수정안은 위원회로 회부할 수 없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에서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여 발언하도록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및 보충발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질의 또는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의회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 12시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주고,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고,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3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④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1회만 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종결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토론 없이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될 때에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 선포된 것으로 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제5절 표결

제44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없다.

제45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제46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 할 수 없다.

제47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의원의 자격심사, 인사와 관련된 안건, 재의요구의 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7조의2(회의의 비공개) <신설 2017.9.29.>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표·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2. 투표가 실시되면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3.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
4.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표는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포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 반대, 기권의 버튼을 누른다.
2.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3. 투표시간은 30초 동안 실시한다.

제4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하나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원안이란 의원, 위원회,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본다.

제50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 중 보존회의록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속기방법에 의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5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제57조(위원회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59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연석회의) ① 회부된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으면,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단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소관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제64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신설 2017.9.29.>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제66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8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반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예산안의 재심 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4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해서는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5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삭제

제76조(시정질문) 삭제

제77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삭제

제78조(시장 등의 발언) 삭제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9조(사직) 삭제

제8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삭제

제8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삭제

제8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삭제

제8장 질서

제83조(경호) 삭제

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삭제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삭제

제86조(방청의 허가) 삭제

제8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기자석과 일반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고~~, ~~위원회의 방청권은 소관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9.29.>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29.>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9.>

②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안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1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삭제

제9장 징계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를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3조(징계회부의 시한) 제9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9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제9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위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2014.7.1. 의회규칙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23호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청원군의회
회의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4.9.24.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9.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8.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민에게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청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민주·인권·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의 선출과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임신 중의 여성의회원이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일 전·후를 더하여 90일(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쌍태아 이상일 경우 60일)이상 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 청구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피심의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일을 정해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답변서가 접수되면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의원과 피심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피심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과 피심의원에 대한 심문, 변명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의장과 부의장

제11조(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본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의장·부의장의 선거후보자 등록 등)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0일 전 18시까지(휴무·공휴일은 다음 날로 한다)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과 함께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 ②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이 그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에 등록철회를 하여야 한다.
 - ③ 의회는 1회에 한하여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선거전 날에 추첨으로 정한다.
 -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의장·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간,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 ⑥ 부의장의 선거도 이와 같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 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망, 불신임 의결, 사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 제70조에 따른 제척의 사유나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한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7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6조 제1항의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6조제2항에 한정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임시의장의 선출 방식은 제13조에 따른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4장 회기 운영

제19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최초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는 법 제 45조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사무국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인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유와 의사일정을 의원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2조(정례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한다.

제23조(정례회 심의사항)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4조(임시회의 회기운영과 심의사항) ① 의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며,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5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26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직인 및 대표의원 사인 인영부와 그 단체 소속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명의 변경과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당적을 변경·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의견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교섭단체의 지원) 의장은 교섭단체가 제27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8명 이내
3. 경제환경위원회 8명 이내
4. 복지교육위원회 8명 이내
5. 농업정책위원회 8명 이내
6. 도시건설위원회 8명 이내

제32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특별위원회 및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위원회
 - 가. 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환경위원회
 - 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4. 복지교육위원회
 - 가.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위원회
 - 가. 농업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 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6. 도시건건설위원회
 -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 나. 주택토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33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상임위원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며, 임기는 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5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방식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38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단, 상임위원장 선거일 전날 18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②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해당위원의 의견을 감안하여 의장이 추천한다.
- ③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내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수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수를 감안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0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 등의 출석·답변

제4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대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국장, 담당관, 실·과장·소장급 공무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국장·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제44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일정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질문도 1문1답식으로 할 수 있다. 단,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질문자의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 7일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일 5일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일 2일 전까지(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45조(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제47조(질서유지) 의원은 회의 중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
5. 회의와 관련 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또는 휴대전화의 사용 행위
6.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행위
7.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8조(경호) ① 의장은 회의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9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방청) ① 의장과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녹음·녹화 등)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의정활동 등

제52조(연구활동)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53조(연수)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연수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정활동의 공개 등) ① 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회의 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 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결과
 5.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③ 의회는 의정활동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④ 의회는 시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입법·법률고문)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56조(의정평가단 운영)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여론수렴, 의정홍보 등을 위하여 의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청원의 처리) ① 의회는 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제59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한다.

② 청원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청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와 의정 1차 간담회

- 일 시 : 2020. 2. 19. 12:30 ~ 14: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8명
 - 남일현, 정태훈, 김영근, 김미자, 박노학, 변종오, 이현주, 박용현
- 주요내용
 - 2020. 활동제를 분과별로 선정하여 연구
 - 코로나19로 단체모임을 지양하고, 분임별 모임으로 활동
 - 5월경에 비교견학 또는 학술세미나 개최
 - 정기모임은 매월 첫 본회의 후 의정자료실에서 모임
 - 김미자 회원을 간사로 선임.

2. 조례와 의정 2차 간담회

- 일 시 : 2020. 4. 28. 17:00 ~ 19: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7명
 - 변종오, 정태훈, 이현주, 김미자, 박노학, 김영근, 박용현
- 주요내용
 - 코로나19와 총선으로 인하여 모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남은 전반기 모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회의 후 회원간 친목을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

3. 조례와 의정 3차 간담회

○ 일 시 : 2020. 6. 25. 13:00 ~ 14:3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6명

- 변종오, 김미자, 박노학, 남일현, 정태훈, 박용현

○ 주요내용

- 총선관계로 미진했던 연구모임의 활성화 방안 토의

-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청주시의회 기본조례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분리 개정할 필요성

- 다음 모임까지 연구용역 과제 돌출 (회원님들의 의견 취합 후 논의)

- 앞으로 모임시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 식사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사로 대응할 수 있는 간식으로 준비하기로 의견 모음

4. 조례와 의정 4차 간담회

○ 일 시 : 2020. 8. 20. 13:00 ~ 14:3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9명

- 남일현, 변종오, 이현주, 김미자, 박노학, 김영근, 정태훈, 박미자, 박용현

○ 주요내용

- 박미자의원 연구단체 회원 만장일치 가입

- 전반기 불미스러웠던 오해를 잊고 각자 연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

5. 조례와 의정 5차 간담회

○ 일 시 : 2020. 8. 25. 16:00 ~ 18: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6명

- 남일현, 변종오, 김미자, 박미자, 이현주, 박용현
- 입법지원팀 : 김영순 팀장, 김택림 주무관

○ 주요내용

-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의
- 회의에 관한 규정만 규칙으로 담고, 기타 조항은 기본조례로 분리하는 것으로 하여 회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9월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함.
- 연구용역 과제를 3건 중에서 다음 모임에 결정하기로 함

-
- ① 조례에 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의 기능별 통·폐합에 대한 연구
 - ② 조례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 규제의 타당성 연구
 - ③ 조례에 대한 사후 실효성 영향평가의 필요성 연구 등
-

6. 조례와 의정 6차 간담회

○ 일 시 : 2020. 9. 24. 14:00 ~ 16: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7명

- 남일현, 변종오, 이현주, 김미자, 박미자, 박노학, 박용현

○ 주요내용

-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관한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기가 어려우므로 전체의원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
- 청주시 예비비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를 연구단체 회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하기로 함.
- 연구용역 과제 선정

연구주제 :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수행기관 : 한국법제 연구원
책임연구원 : 차현숙 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

7.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0. 10. 22. 13:30 ~ 15: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7명

- 이현주, 김미자, 박미자,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박용현,
- 입법지원팀 : 김영순 팀장, 김택림 주무관
- 한국법제연구원 : 차현숙(연구책임자), 박훈민(공동연구자), 임주왕(연구원)

○ 주요내용

- 연구용역과제 착수 보고회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1. 자치법규 입법평가제도 관련 성행연구 분석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 현황 분석
3.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제도 도입 이후 조례 실효성 확보 관련 효과 분석

제3장

1.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평가 개관
2.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평가 관련 현황
3. 소결

제4장

청주시 자치법규 실효성 영향평가 조례안 및 분석지표 주요 내용 해설

-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11월 25일~12월 5일 사이에 의회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로 함.

8.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면)

- 일 시 : 2020. 11. 30. 13:00 ~ 15: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9명
 - 김미자, 박미자, 이현주, 남일현, 정태훈, 김영근, 박노학, 변종오, 박용현
- 주요내용
 - 제출된 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 후 의견서 작성
 - 조례 분석지표에 실효성평가에 대한 문안의 필요성
 - 일본 카오사키시 및 오슈시의 자치 기본조례 부록으로 첨부.

9. 연구용역 최종보고회(화상회의)

- 일 시 : 2020. 12. 14. 14:30 ~ 17:3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참석회원 : 7명
 - 이현주, 박미자, 김미자,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박용현, 김영근
 - 입법지원팀 : 김영순 팀장, 김택림 주무관,
 - 한국법제연구원 : 차현숙 박사.
- 주요내용
 -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으로 보고 받음.
 - 연구과제물 최종 납품은 12월24일까지 납품하기로 함.

10. 조례와 의정 결과보고회

○ 일 시 : 2020. 12. 23. 13:00 ~ 15:00

○ 장 소 : 의정자료실

○ 참석회원 : 9명

- 박미자, 이현주, 김미자, 정태훈, 남일현, 김영근, 박노학, 변종오, 박용현.

○ 주요내용

-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채택
- 지난 1년간 연구모임에 대한 소회와 추후 보완할 점 등 의견 교환
-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

1. 대표위원 박용현 의원

코로나19와 총선으로 인하여 전반기 연구모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9명의 회원이 한마음으로 분임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얻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반기에 회원 단합을 위한 회식 후 사실에 근거 없는 것이 와전되어 한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자괴감도 있었지만, 연구단체란 공동의식이 있어 서로 더 큰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연구하고 배운 작은 것들을 모아 발행된 이 보고서와 용역과제물이 청주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 회원님 모두는 큰 보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간사 김미자 의원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조례와 의정” 연구모임이 최종 보고서에 이르게 된 것은 대표님의 뜨거운 열정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3. 회원 이현주 의원

2020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올해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의정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모든 국민들 또한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는 대표님의 지속적인 노력과 회원님들의 협조로 용역결과 보고회를 잘 마치기도 했고,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살펴봄으로써 청주시의 조례가 시민의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만 얹었을 뿐인 것 같아 민망하기는 하지만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빌며, 함께 하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4. 회원 박미자 의원

2020년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안타까운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례와 의정” 연구모임에 애정을 갖고 커다란 성과물을 만들어 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겠죠. 연구용역과제까지 무사히 마침을 자축하며 남은 2020년도 행복으로 마무리하세요.^^

다가올 새해는 기쁜 일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5. 회원 박노학 의원

청주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해 동안 수고하신 “조례와 의정” 연구모임 박용현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마스크 벗고 웃는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 회원 남일현 의원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 박용현 대표님과 의원님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연구용역 결과로 청주시 조례의 실효성평가를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청주시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 등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7. 회원 변종오 의원

지난 시간 “조례와 의정” 연구모임을 통해서 박용현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는 공정성과 활용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모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박용현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 회원 정태훈 의원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도,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 밀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누었던 소중한 의견들이 차곡차곡 쌓여 연구모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그 동안 수고하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자료와 의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활동사진 및 정산

□ 조례와 의정 정기모임(매회기)





□ 조례와 의정 용역 착수보고회



충청매일 2020년 10월 23일 (금) 05면 종합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연구단체 '조례와 의정'이 22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청주시의회 '조례와 의정' 연구 용역 착수

조례 입법평가 기준 개발 기대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연구단체 '조례와 의정(대표 박용현)'은 22일 시의회 의정자료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연구'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와 의정' 소속 의원들이 청주시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제안한 사업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기준을 개발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청주시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시 470여개의 조례와 앞으로 제정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연구용역에는 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연구 추진 계획을 설명한 뒤 용역 추진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약기자
12.2 X 16.7 cm

□ 조례와 의정 용역 최종보고회





□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조례와 의정)

(단위 : 원)

연번	지출일	수입.지출내역	수입금	지출금	잔액	비고
1	20.02.28	연구활동비 수령	3,000,000		3,000,000	
2	20.04.28	소회의 식대		184,000	2,816,000	체크카드
3	20.05.27	체크카드 할인	368		2,816,368	
4	20.06.25	소회의 음료		13,700	2,802,668	체크카드
5	20.06.28	예금이자	963		2,803,501	
6	20.06.28	결산소득세		130	2,803,501	
7	20.06.28	결산지방세		10	2,803,491	
8	20.08.20	연구단체 회원 usb 구입		268,200	2,535,291	체크카드
9	20.08.25	소회의 음료		31,700	2,503,591	체크카드
10	20.08.25	소회의 다과류 구입		170,000	2,333,591	체크카드
11	20.09.24	소회의 다과류 구입		200,000	2,133,591	체크카드
12	20.09.28	체크카드 할인	939		2,134,530	체크카드
13	20.10.22	소회의 식비		105,000	2,029,530	체크카드
14	20.10.27	체크카드 할인	400		2,029,930	
15	20.10.27	체크카드 할인	210		2,030,140	
16	20.12.08	조례와 의정 관련 서적 구입		270,000	1,760,140	계좌이체
17	20.12.14	연구단체 회원 다과류 구입		375,000	1,385,140	체크카드
18	20.12.14	소회의 음료		17,000	1,368,140	체크카드
19	20.12.18	조례와 의정 관련 서적 구입		250,000	1,118,140	계좌이체
20	20.12.22	소회의 식비(식권 구입)		360,000	758,140	체크카드
21	19.12.02	예금이자	1,125		759,265	

연 번	지출일	수입.지출내역	수입금	지출금	잔액	비고
22	19.12.03	결산소득세		150	759,115	
23	19.12.04	결산지방세		10	759,105	
계			3,004,005	2,244,900	759,105	